2019. 1.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

목 차

1. 추진방향 ······ 1

2. 추진개요 ······ 1

3. 세부 추진계획 ······ 2

1 계획수립 ······ 3

2 연구과제 접수 및 선정 ······ 3

3 계약업체 선정 ······ 5

4 연구용역 수행 ······ 5

5 연구용역 평가 ······ 6

4. 소요예산 ······ 6

5. 추진일정 ······ 7

[붙임] • 연구용역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서식) ·· 8

• 관계법령 발췌 ······ 11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 2019년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지원,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임.

1 추진방향

❍ 도의회 당면현안 중심의 연구용역 수행으로 정책연계 활용 극대화

❍ 지방의회 발전 등 도의회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과제 발굴

2 추진개요

❍ 연구대상 : 의원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 연구과제 제안

- 도의원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과제 제안
- 사무처 제안 : 상임위 소관 외 의회현안 등은 사무처장이 제안서 제출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조례」제6조

❍ 선정건수 : 5건 정도(※ 1건당 10,000천원 범위) ※ 정책위원회 심의시 변경 가능

-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우선순위 과제를 예산액 범위(50,000천원)에서 선정

❍ 용역관리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총괄

- 수행관리 : 소관 상임위원회 / 의회사무처(소관 담당관)
- 연구용역 평가 : 정책위원회위원장

※ 동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 계약방법 : 공모(20,000천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예산액 : 50,000천원(연구용역비)

3 세부 추진계획

【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절차 요해 】

1 계획수립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①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 기본방향 설정, 연구과제 및 계약업체 선정방법 - 연구용역 수행관리 및 평가
2 연구과제 접수 및 선정	➡	【상임위원회위원장 / 정책위원회위원장】 ① 연구용역 과제 접수(입법예산정책담당관 ⇄ 각 상임위 / 의회사무처) - 연구과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접수 ② 과제제안(우선순위) : 상임위원회위원장, 사무처장→정책위원회위원장 - 제안과제 유사·중복여부, 당면현안, 용역 적정성 검토 등 ③ 연구용역과제 심의·선정(정책위원회)
3 계약업체 선정	➡	【공모 또는 수의계약 의뢰 /총무담당관】 ①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 소관 상임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과업내용 확정 ② 절차를 거쳐 계약 체결(총괄부서 의뢰 → 계약부서)
4 연구용역 수행	➡	【소관 상임위원회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① 보고회 개최(소관 상임위 / 의회사무처 소관부서)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② 연구용역 완수처리(소관 상임위 / 의회사무처 소관부서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 준공검사(검수) 등 ③ 간행물 등록(입법예산정책담당관)
5 연구용역 평가	➡	【정책위원회위원장】 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충실성·우수성 등 평가 ②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평가결과 공개 - 도의회 홈페이지 공개 ※ 2019년 연구용역과제는 2021년 1월중 평가

1 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입법예산정책담당관) : 의장 방침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4조

- 연구과제 제안 및 선정방법
- 계약업체 선정 및 연구용역 수행관리
- 연구용역 평가 등

2 연구과제 접수 및 선정

< 연 구 대 상 >

► 연구범위
- 지방의회 현안, 지방의회 발전 등 의회 관련 과제
- 조례 제·개정으로 도민 권익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과제
- 학술적 연구를 통해 충남도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과제

► 연구건수 : 5건 내외, 건당 10,000천원 범위(상임위 및 사무처 제안)

► 과제선정 기준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8조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 과제선정 제외사업

·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최근 5년)
· 실무 차원의 시행여부 검토가 가능한 용역
· 장기용역사업(1년 이상)으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낮은 용역
· 전산 및 기술용역, 기타 연구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① 제안과제 모집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6조

○ 모집안내

- 총괄부서(입법예산정책담당관)가 각 상임위원회 및 각 담당관에 공문발송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속 의원에게 연구과제 제안 안내)

→ 의원 제안과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위원장에 제출, 소관 담당관 제안 과제는 의회사무처장에 제출

❍ 제안과제 접수 및 검토

- 의원이 제안한 과제는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1차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상임위원장이 정책위원회위원장에 제출

※ 연구의 전문성, 활용도 강화를 위해 제안 의원은 소속 상임위 관련 과제 제출 권장

- 사무처장은 각 담당관 등이 제안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제출

※ 연구용역과제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사전검토하게 할 수 있음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9조

❍ 제출기간 : 2019년 1월 ~ 2월

- 제출서류 : 과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각 1부 (붙임)

② 정책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연구용역 과제 심의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기능) 및 제3조(구성)에 의거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 연구용역 과제 선정 : 상임위원회 연구과제 및 사무처장이 제출한 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7조

- 상임위원회 제안과제 및 사무처 제안과제(우선순위)에 대하여 검토·심의, 예산액 범위에서 용역과제 건수 최종 확정

<과제선정 기준>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8조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 연구용역비는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수의계약 금액 결정(총무담당관에 수의계약 의뢰)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제안 현황 (서식 예시)

제안 부서		우선순위	연 구 과 제	소요예산(천원)	선정여부	비고
계						
상임위	○○○위원회	1	○○○	10,000	○	
		2	○○○	8,000	×	
사무처	○○담당관	1	○○○	10,000	○	
		2	○○○	9,000	×	

※ 연구용역 선정기준(중복여부, 타당성, 용역비 적정성,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심의로 연구용역 과제 최종 결정

3 계약업체 선정

❍ 연구기관의 선정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선정

❍ 계약방법 : 공모 또는 수의계약(20,000천원 이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절차 이행 추진

→ 다만, 동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계약은 수의계약 체결

❍ 계약부서 : 총무담당관에 의뢰 계약체결

4 연구용역 수행

❍ 연구용역 관리 : 입법예산정책담당관(총괄부서)

<관리 원칙>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 예산의 효율적 집행

•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 보고회 개최 및 연구진행 상황 점검·관리 : 소관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소관 부서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제2항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연구 세부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 계약만료 45일 전 용역 진행상황 및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 14일 전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

• 연구용역보고서 최종 검토 및 확인

❍ 연구용역 완수 등 : 소관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소관 부서

- 연구용역 완수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소관 부서에서 최종검토 한 연구용역 결과물(보고서)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검수) 처리

- 연구보고서 결과물 발간·등록 및 배포

· 배부대상 : 전체 의원(42명), 상임위, 집행부 해당 실과 등

❍ 연구결과 및 평가결과 공개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3조

- 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 → 간행물 → 입법정책 연구용역)

3 연구용역 평가

❍ 평가개요

- 평가시기 : 2020년 1월
- 평가대상 : 2019년도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예시 : ‘○○○○ 방안’ 등 ○○건)
- 평가주체 : 정책위원회위원장
- 평가내용 :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평가분야(100점)	평 가 항 목	비 고
충실성(20점)	· 용역수행 관리(10)	입법예산정책담당관이 정량평가한 점수
	· 용역기한 준수(10)	
우수성(80점)	· 연구내용의 부합성(20)	평가위원의 산술평균한 점수
	·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20)	
	·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20)	
	· 연구결과의 활용실적(20)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2조제3호 및 「충청남도의회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2조

❍ 평가결과 활용

- 도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 용역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은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은 수의계약 제한

4 소요예산

❍ 예산액 : 75,000천원

- 연구용역비 : 50,000천원

  · 배정계획 : 10,000천원×5개 상임위(각 상임위별 1건 10,000천원)
  → 연구용역과제 심의·선정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무관리비 : 25,000천원

  · 정책위원회 참석수당 : 1인당 150,000원

※ 예산과목 : 자치입법활동지원-연구용역비(207-01) 및 사무관리비(201-01)

5 추진일정

❍ 2019년도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 2019년 1월

❍ 2019년도 연구용역 추진계획 안내 : 2019년 1월

- 입법정책 연구용역 제안과제 모집 안내 및 접수
  · 상임위원회 과제(각 상임위원회위원장) : 2019년 1월~2월

❍ 2019년도 연구용역 추진

-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선정 : 2019년 2월
- 수의계약 : 2019년 3월
- 연구용역 과제수행 : 2019년 4월 ~ 11월

❍ 2019년도 수행 연구용역 평가 : 2021년 1월

- 정책위원회위원장이 연구결과물의 충실성, 우수성 등 평가
- 정책위원회 평가결과 보고, 총평작성 및 공개

붙임 : 연구용역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서식)

〈서식〉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소 관 부 서	
소 요 예 산	금__________원
소 요 기 간	○ 개월 (※ 실제연구 소요기간)
연구 필요성	○ ○ ○
주 요 연구내용	○ ○ ○ ※ 분량은 제한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활용계획	○ ○ ※ 분량은 제한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 있 음 ( ) ※ 유사용역이 있을시 차별화 방법을 분량 제한없이 기재
제안자	소속 : 성 명 : (서명)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귀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개월 이내

다. 사업예산 : 금 ○○○천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나.

다.

라.

마.

3. 과업의 내용

가.

○

-

-

나.

○

-

-

다.

○

-

-

-

산 출 내 역 서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2019. . . ~ 2019. . . (착수일로부터 개월)

(단위 : 원)

항목			단 위	산출 내역		구성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역원가	① 노무비	책임연구원					인원×기준단가×적용율 ※ 적용율(참여율×2)
순 용역원가	① 노무비	연구원					
순 용역원가	① 노무비	연구보조원					
순 용역원가	① 노무비	보조원					
순 용역원가	① 노무비	**노무비계**					
순 용역원가	② 경비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순 용역원가	② 경비	유인물비					인쇄기준 요금
순 용역원가	② 경비	전산처리비					예정가격 작성기준
순 용역원가	② 경비	연구용재료비					예정가격 작성기준
순 용역원가	② 경비	회의비					수당은 예산편성기준
순 용역원가	② 경비	교통통신비					예정가격 작성기준
순 용역원가	② 경비	조사비					필요한 경우에만 계산
순 용역원가	② 경비	**경비계**					
③ 순 용역원가(①+②)							
④ 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⑤ 이윤 (③+④의 10%이내)			%				이윤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 + ④ + ⑤)							
⑦ 부가가치세 (⑥ 의 10%)			%				
총 용 역 비							

※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96호 일부개정 2017. 12. 26.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 ·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정책 연구용역"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리"란 연구용역 과제공모에서부터 연구용역의 완수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입법정책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연구와 정책개발 등의 의정활동이 자유롭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입법 및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4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책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위원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즉시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위원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해당연도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예산지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원은 연구용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할 수 없는 의회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이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연구용역 과제선정) ①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심의하여 최종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한다.

제8조(연구용역 과제선정기준) 연구용역의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9조(연구용역 과제 사전검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 과제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사전 검토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기관의 선정)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한다.

제11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총괄부서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제6조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제안·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제안·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2조(연구용역평가) 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대한 평가를 한다.

제13조(결과의 공개) 위원장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 및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표창) 의장은 연구활동 성과가 우수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및 개인을 선정하여 「충청남도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2.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
3.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과제의 심의·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활용관리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2.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인
3.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의원 각 1인
4.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인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계 전문가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입법정책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전반기 위원은 후반기 도의회 원구성 전까지로 하고 후반기 위원은 도의회 의원의 임기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건의 사전검토 ·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 · 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3.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 · 평가 및 연구

③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6조 제목 "의정자문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제16조제1항 중 "자문과 정책과제 연구를"을 "정책연구 등을"으로, "의정자문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정자문"을 "정책연구 등"으로,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를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